

1. 개정이유

보훈 관련 단체에서 총회를 매 3~5월경 연 1회 소집하는 실태를 반영하여, 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예산을 보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,

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, 서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개선(안 제11조)

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까지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, 동 절차를 정관에 따른다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“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”라는 문구를 삭제함

나. 각종 서식 개정(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)

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, 각 서식의 작성방법 부분을 구체화하여 각 서식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”를 “총회 또는 이사회(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)”로 한다.

제12조제5호 중 “총회”를 “총회 또는 이사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총회”를 “총회 또는 이사회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항, 제12조제5호,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결산 보고 서식에 관한 적용례)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수익사업 성과 명세서

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

보훈 관련 단체명:

(단위: 원)

귀속 주체 (사업소별)	매출액	매출원가	사업이익	경상이익	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	당기 순이익
○○사업소						
○○사업소						
○○사업소						

작성방법

- 경상이익은 사업손익에서 사업외손익(사업외수익에서 사업외비용을 차감한 것)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의 운영으로 인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.
- 고유목적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회원복지 및 단체운영 등을 위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서 고유목적회계로 전출한 금액으로서 「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의 당기 수익사업수익금과 같습니다.

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

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

보훈 관련 단체명: (단위: 원)

회원복지비 지출 항목 본부 및 지부(특별지회)명			
본부			
○○지부 (○○특별지회)			
소계			
합계			

작성방법

- 이 서식은 「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의 “회원복지비 지출” 란의 내용을 세분화 한 것입니다.
- “회원복지비 지출 항목” 란(회색 바탕으로 된 빈칸들을 의미합니다)에는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을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적되, 항목의 수는 보훈 관련 단체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, 각 항목 아래(흰색 바탕으로 된 빈칸들을 의미합니다)에는 각 소계 부분 전까지 본부 및 각 지부(특별지회)를 구분한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 금액을 적습니다.
예시) 고령회원 위문품, 회원 대상 장학금 등
- “본부 및 지부(특별지회)명” 란에는 보훈 관련 단체의 본부 및 각 지부(특별지회)를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.
예시) 본부, 서울지부 등
- 회원복지비는 비용으로 인식 가능한 지출만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되, 회원복지를 위한 자산 구입 등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란에 구분하여 적고,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.
-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 산정기준
 - 전체 회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.
예시) 전체 회원에게 명절·기념일의 기념 선물 등을 주는 경우
 - 일부 회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.
예시)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회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고령회원·환자 등에게 위문품, 장학금 등을 주는 경우
 -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.
예시)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회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회원의 가족(유가족 포함)에게 위문품, 장학금 등을 주는 경우
 - 회원복지비로 볼 수 없는 경우
 - 본부에서 지부, 지회 및 특별지회(이하 “지부등” 이라 합니다)에 지원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단체운영비로 보되, 회원복지에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.
 - 회원복지비 인정기준을 갖춘 경우라도 혜택을 받은 대상이 임원 또는 지부등의 장인 경우에는 단체운영비로 봅니다.
 - 다른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, 지원금 등은 단체운영비로 봅니다.
 - 임직원의 워크숍, 식비 등은 단체운영비로 봅니다.
- 보훈 관련 단체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사업소의 수익금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본부로 전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부 또는 특별지회에서 직접 회원복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회계연도의 소속 구분) ① (생략)	제6조(회계연도의 소속 구분) (현 행 제1항과 같음)
제11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,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	제11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 ① ----- ----- --- <u>총회 또는 이사회(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)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.	제12조(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예산을 의결한 <u>총회</u>의 회의 록 사본 제16조(예산의 전용) ① (생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<u>총회</u>의 예산 의결 과정에서 삭감된 관·항·목으 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.	5. ----- <u>총회 또는 이 사회</u>-- 제16조(예산의 전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총회 또는 이사회</u>- ----- -----.
---	--